「인천도시공사내 불공정 업무행태 및 부당지시 관련」

특 정 감 사 처 분 요 구 서

2021. 1.

仁川廣域市
http://www.incheon.go.kr

감 사 관 실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인천도시공사]

연번	부서명	분야	제 목	처분사항	비고
1	☆☆☆☆처, ★★★★처, ○○○○○○처, ●●●●처, ◎◎◎◎처, ◇◇실	예산 회계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및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기관경고 행정상 주의	
2	◆◆처	재산 관리	사업용 재산 등 대부관리 부적정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1]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및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처, ○○○○○○○처, ●●●●처, ◎◎◎◎처,

◇◇실

내　　용

1. 현 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19. 8월부터 2020. 6월까지 [표 1]과 같이 '□□□□ 조성사업 미분양 토지 매각활성화 관련 용역'등, 총 5건의 사업을 변경·추진함에 있어 증액된 사업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익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예산부족 사업 증액 계약 체결현황(2019~2020)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변경(계약)일자	준공(예정)일자	최초 계약금액	미확보 예산 증액계약 금액	비고
1	콜센터 운영위탁용역	2019.8.07	2020.6.22.	532,790	**70,057**	수의
2	2019 웹디자이너 파견용역	2019.11.25.	2020.4.30.	45,063	**17,940**	수의
3	2019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19.12.28.	2020.4.30.	24,120	**6,930**	수의
4	■■AB1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0.6.26.	2021.6.10.	6,424,000	**182,455**	일반
5	□□□□ 조성사업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관련 용역	2020.9.15.	2021.12.31.	784,080	**211,993**	일반

2.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절차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기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예산안을 송부하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 제3조의 공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표 2]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공사·공단의 장		공사·공단의 장→각 이사 -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추경시는 7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공사공단의 장 → 자치단체장

아울러,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기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하며 소속기관이 지출 의무를 지는 예산의 집행 행위로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소속 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행위 등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최종 지출단계 이전부터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회계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 제48조에서도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 배정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익년도 예산으로는 지출할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7조에 따르면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 및 회계를 담당하는 자가 사장의 위임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회계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변경·추진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사업 변경·발주 당시 설계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의 변경이 있어 당초 편성된 사업예산보다 증액 되었음에도, 해당 증액된 부분의 예산을 지급하는 시기가 익년도라는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증액·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지출'이라는 회계질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 미이행

2018. 12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표 3]과 같이 사업 발주 당시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후 계약대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당해연도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사업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그 기간의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못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사업 발주 시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이 없음에도 사업을 발주하고 단년도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발견되어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3] 예산 없는 사업 계약 체결현황(2015~2018)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사업예산	계약금액 (미확정 예산)	비고
1	2015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2015.4.30.	2016.3.31.	0	(92,702)	
2	△△△△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2015.6.11.	2017.2.25.	300,000	866,674 (566,674)	
3	2016 회계감사 용역	2016.4.29.	2017.3.20.	0	(83,600)	
4	▲▲▲▲▲ 이주관리 및 사업지구관리 용역	2017.1.20.	2017.10.19.	500,000	1,522,470 (1,022,470)	
5	2017 회계감사 용역	2017.4.28.	2018.3.31.	0	(87,780)	
6	2018 회계감사 용역	2018.4.23.	2019.4.30.	0	(102,4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의 ‘2018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에 예산 범위 내 사업 발주 및 다년도 계약 시 장기계속계약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 및 교육을 통하여 지도예정이다’라는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2020. 10월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도 [표 1]과 같이 종합감사 직후인 2019.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건의 사업 변경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8년도 종합감사 감사결과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감사 이전과 동일하게 부적정한 회계업무를 계속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4] 2018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당해 배정된 예산범위내 사업발주, 계약체결 후 지출원인행위 실시,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한 경우 절차에 맞게 이월하는 등 규정에 맞게 처리 ○ 각 사업담당자들이 법령 등을 숙지하여 규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교육 및 지도 강화	○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계약·착수 및 준공 되도록 하여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음. ○ 부득이 과업기간이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 계약금액 중 미이행 금액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차수계약 시 반영 예정 ○ 각 사업부서에 예산 범위 내 사업발주 및 다년도 계약 시 장기계속계약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 및 교육을 통하여 지도예정	완결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기관경고] 사업발주 및 변경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확보된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회계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의] 예산 및 계약, 사업 담당자가 예산·회계 업무에 숙달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인 천 광 역 시

행 정 상 주 의

제　　목 사업용 재산 등 대부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1. 현 황

인천도시공사(◆◆처)에서는 인천광역시 ▽▽동 소재 사업용재산중 토지에 대한 대부신청에 대하여 [표]와 같이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 대부하였다.

[표] ▽▽동 소재 사업용재산중 유상 대부토지 현황

지 번	대장면적 (㎡)	대부면적 (㎡)	대부기간	대부료 (원)	대부료 분할 납부 보증	비고
계	**21,508.3**	**1,256.0**		**208,778,650**		
▽▽동 29-6	9,476.3	230.0	'20. 1. 8. ~ '21. 2. 7.	45,223,750	미보증	AAA
		330.0	'20. 9. 1.~ '21. 8.31.	62,254,500	임대보증금	BBB
▽▽동 29-7	12,032.0	300.0	'20.10. 1.~ '21. 9.30.	56,595,000	임대보증금	C업체
		396.0	'20. 7.13.~ '21. 7.12.	74,705,400	임대보증금	D업체

※ 차고지용 대부토지 제외

2. 대부료 분할납부시 할부이자 미부과

「인천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대부료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사의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중 자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공기업」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제2항에 의하면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처)에서는 대부 신청인들이 대부료 과다 등을 사유로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일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대부료에 할부이자를 붙여 징수함이 타당함에도 할부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대부료 분할납부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동29-6 230.0㎡을 대부하고 대부료를 4회 분할납부하게 하면서 잔여 대부료 등에 대한 보증금 납부 또는 인천도시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사업용 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니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의 체결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분할납부시 할부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인천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21 - 1호

경 고 장

소 속 : 인천도시공사

귀 기관에서는 사업발주 및 변경 등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엄중『경고』하오니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사유】 : 붙임

2021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장의인